

의안번호	제 259 호
의 결 연 월 일	2011년 12월 일 (제305회)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안

발 의 자	임헌경 의원 외 6명
발의연월일	2011년 12월 2일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안

(임헌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9
----------	-----

발의연월일 : 2011년 12 월 2일
발 의 자 : 임헌경, 권기수, 김동환,
김재중, 이광진, 이수완,
임 현

1. 제정이유

-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건축물 설치 및 도시기반시설, 가로시설물의 사업계획 수립시 창의성과 예술성, 미적 감각이 가미된 공공디자인을 도입하여
-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기본원칙, 세부 기준,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의무화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본원칙, 대상기관, 대상시설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시범사업 시행 및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3. 조 례 안 : 불입

4. 관계법령 발취 : 해당없음

5. 비 용 추 계 서 : 불입

6. 관련부서 협의 : 균형건설국 건축디자인과와 협의

7.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11. 11. 10. ~ 11. 29.)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 공간·시설·시각정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공사 및 도에서 50%이상 출자·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3.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기본원칙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
5. “인증”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 및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공공적 가치 추구하고 목적의 구현
2. 역사·문화·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 고려
3. 예술성·창의성·절제미의 추구
4. 쾌적성·안정성·기능성의 확보

5. 지속가능성 및 자연환경·주변환경과의 조화
6. 이용자 중심의 복지디자인 적용

제4조(도지사, 시장·군수의 책무)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2장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등)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충청북도공공디자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체계구축·관리
3. 공공디자인의 제도 개선 및 주요시책
4. 공공디자인의 분야별·권역별·지역별 계획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성과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군 및 공공기관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군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공공디자인업무 협의 등) ① 공공기관에서 공공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디자인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협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제작·설치·용역
2.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사항
3.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신청
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공공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제1항의 협의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이루어져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협의요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지원하여야 한다.

1. 사업내용의 공공디자인 요소와 경제성에 대한 적정성
2. 사업시행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
3. 기존 시설물과의 디자인 통합 및 이미지 연계 등
4. 제안공모사항 및 심사계획에 대한 공공디자인 반영의 적정 여부 등

⑤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신청 시 1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 하여야 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보완요청할 수 있다.

⑥ 총괄부서의 장은 관계기관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사업에 대하여 계획부터 완료될 때까지 자문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 제안공모 및 심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제8조(공공디자인 비용계상)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을 제작·설치함에 있어 그 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공공디자인에 관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

제9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참가자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상 시·군의 균등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군별로 공공디자인안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디자인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주민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기타 시범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공공디자인 전시회 개최) ① 도지사는 공공디자인 진흥과 수준향상 등 공공디자인을 개발·장려하고 이를 발굴·홍보하기 위하여 관련단체와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을 심사하여 우수작품을 선정·시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출품 작품의 심사위원은 충청북도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으로 하되 필요시 5명 이하의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한다.

제11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 ① 도지사는 우수한 공공디자인의 발굴,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도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설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 공공디자인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 ③ 기타 우수 공공디자인의 인증 또는 취소, 적용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제12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충청북도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3. 중앙부처 또는 도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시장·군수에게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
 4. 시장·군수에게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 중 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5.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에 필요한 심사
 6.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대상, 시기 및 방법, 대상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심의·자문결과 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공디자인과 관련 있는 도소속 공무원
 2. 도의회 의원
 3. 도시계획·건축·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조명·공공예술·산업디자인 등 디자인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디자인 관련 학회 및 협회, 연구소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공디자인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심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 자문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때
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한 때
4. 그 밖에 위원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도지사로부터 심의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전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및 자문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7조 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제19조(회의록 등)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전문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22조(운영세칙)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3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디자인 자문·심의대상 시설물 (제2조제3호 관련)

1. 공공건축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공공청사	가. 지방자치단체 청사 나. 공공교육, 연수시설 다. 공공안내시설 등
문화복지시설	가. 경기장 나. 체육관 다. 공연장 라. 의료·복지시설 마. 복지회관 바. 광장·공원·놀이터 등 (벤치, 의자, 파고라 등을 포함한다)
전시·홍보시설	가. 박물관 나. 미술관 다. 홍보관 라. 전시관 마. 기념관 등
휴양시설	가. 수목원 나. 휴양림 등
환경시설	가. 쓰레기소각장 나. 재활용선별장 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라. 공중화장실 등

※ 공공청사 :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공사비 30억원 이상

2. 도시기반시설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도로시설물	가. 교량(2차로 이상, 연장 30m 이상) 나. 고가차도 다. 입체교차로, 지하도, 지하차도, 터널 등
도로부속 시 설 물	가. 보도육교 나. 방음벽 및 방호울타리(도로폭 25m 이상, 연장 50m 이상)

3. 가로시설물

분 류	시 설 물 의 종 류
도로부속시설	가. 가로등(도로폭 25m 이상인 도로에 20주 이상 설치시) 나. 도로안내사인 다. 자전거도로 라. 자전거보관대 등
관광안내시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사인 라. 상징조형물 등
가로녹지시설	가. 가로수보호덮개 나. 가로화분대 등 (덮개 또는 화분대 50개소 이상 설치시)
환경관리시설	가. 휴지통(20개소 이상 설치시) 나. 대기오염 전광판 등
친수공간시설	가. 하천 나. 공원 및 도시내 수경공간 다. 분수대
교통관련시설	가. 택시·마을버스· 시내버스·공항버스 승차대 및 안내표지판 나.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조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 수반요인

-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및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공모전과 통합적인 디자인 이미지 구축을 위한 인증제 시행을 위한 경비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은 1개소당 3억원 지원으로 년 3개소의 사업비와 공공디자인 공모 및 공공디자인 인증제 시행에 따른 시상금과 우수작 도록(圖錄)·CD제작, 전시 등에 대한 경비를 산정하였음.
- 따라서 실제 비용지출에 있어서는 사업 규모 및 내용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음
- 물가 변동과 인상요인을 배제하였음

3.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년도	'12	'13	'14	'15	'16	총계
계	990	990	990	990	990	4,950
공공디자인시범사업	900	900	900	900	900	4,500
공공디자인 공모전	60	60	60	60	60	300
공공디자인 인증제	30	30	30	30	30	150

4. 부대의견

- 경제성장과 더불어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경제적 욕구에서 삶의 질을 강화하는 추세로 공공디자인의 선진화 및 확산을 도모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공공디자인은 도시의 품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그 지역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며, 공공디자인을 통한 고급 도시브랜드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사업규모에 따라 예산 증감이 예상됨.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충청북도의회 임헌경 의원
연락처	사무실 : 043) 220 - 5136 E-mail : kcta6323@yahoo.co.kr

II. 비용 추계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전 체			비 고
	계	도비	시군비	
계	3,090	990	2,100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3,000	900	2,100	3개소
공공디자인 공모전	60	60		
공공디자인 인증제	30	30		